

「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10월 2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3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11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전해순 가족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내 일부 단체가 이전하고 신설됨에 따라 시설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평창군 문화복지센터”의 정의에서 실내놀이터,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여 “실내놀이터,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, 노인복지시설, 관리사무실, 여성회관, 청소년 문화의 집”으로 규정함
(안 제2조제1호)
- “복지기획담당”을 “드림스타트 팀장”으로 함.(안 제17조제6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

신설되고 이전된 시설들을 추가하여

‘평창군 문화복지센터’의 정의를 기존 ‘노인복지시설, 관리사무실, 여성회관,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’에서

‘실내놀이터,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, 노인복지시설, 관리사무실, 여성회관,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’로 확대 규정하고,

평창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회 구성원인 ‘복지기획담당’을 ‘드림스타트 팀장’으로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

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한다)란”을 “한다)란 실내놀이터,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,”로 한다.

제17조제6항 중 “복지기획담당”을 “드림스타트 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평창군 문화복지센터“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란 노인복지시설, 관리사무실, 여성회관,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17조(운영위원회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<u>복지기획담당</u>을 간사로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한다</u>)란 <u>실내놀이터,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</u>,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운영위원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<u>드림스타트 팀장</u>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